

■ 수의사법 시행규칙 [별표 1의2] <신설 2012.1.26>

비용의 지급기준(제22조의2 관련)

1. 수의사에 대한 비용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.

가. 주간근로인 경우: 「공무원보수규정」 별표 33 제3호나목 전문계약직공무원의 다급 상한액을 기준으로 동원된 기간만큼 일할계산한 금액(1일 8시간 근로 기준)

나. 야간·휴일 또는 연장근로인 경우: 가목에 따른 금액에 「근로기준법」 제56조에 따른 가산금을 더한 금액

다. 여비 지급이 필요한 경우: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 제30조에 따른 여비

2. 시설·장비에 대한 비용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.

가. 소모품의 경우: 구입가 또는 지도·명령 당시 해당 물건에 대한 평가액 중 작은 금액

나. 그 밖의 장비의 경우: 장비의 통상 1회당 사용료에 사용횟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또는 동원된 기간 동안의 감가상각비 중 작은 금액